

이 9 2 6 7

기안자	사회과 김정준	전화번호	206	종보	필	요	불	필	요
구로	계장	사회과	장	보사	국장	제	2부	시장	시
원	차	사회과	장	내	무국	장	장	장	장
서	명	법제	제	회	정	의	장	장	장
기	년	월	일	66. 4. 21	일	시	1.30	시	시
분류	구호	번호	1461	1461	1461	1461	1461	1461	1461
경우	유선	번호	1461	1461	1461	1461	1461	1461	1461
제	목	서울특별시립후생사업장 운영에 관한							

제  
원  
에  
의  
함  
호  
실  
함

(제 1 안)

우선 내부결재  
 제 목 서울특별시립후생사업장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립후생사업장 설치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법시정방안에 의  
 하여 현과 상시하고 있는 동 사업가격 12  
 원 6원을 8원으로 인상하고자 동 규  
 칙을 개정함과 같이 변경실정 운영규  
 칙 제정함을 바랍니디

제  
원  
에  
의  
함  
호  
실  
함

1. 1966. 5. 1부터 시행한다

(제2호)

우선: 우선채 참조      병산 시장  
제 목      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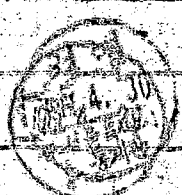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인민후생사공영체 조례 제  
4호의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인민후생  
공영체 운영을 강화하고 인민바탕 시장  
경쟁력에 따라 등영공영체를 별첨  
과 같이 ~~개정~~ 실시케 하였으니 등영공  
영에 차관 없음 등

1. 1966. 5. 1부터 시행함

우첨: 서울특별시인민후생공영체 1부

우첨

서칭 4~9      서사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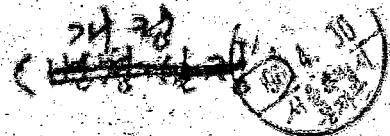


5-2



科		歲入豫算増額		備考
項	細項	目	増加額	備考
雜收入	雜收入		1,519,000	
		雜收入	1,519,000	1. 이 금액 2. $3,100 \times 245 = 1,519,000$
計			1,519,000	

시립후생식당운영요강



1. 목적  
영세부통근로자 및 국민양세민으로 하여금 열가로 주시 (곡수 1기식)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활향상 및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방법

가. 본식당은 구청장 및 시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나. 본식당은 매일 10시에 개장한다

다. (1)남대문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500명으로 정한다

(2)상동(상수동, 신당동)마포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400명으로 정한다

(3)상북, 서대문(북아현동, 홍은동)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200명으로 정한다.

(4)용산, 영등포식당 급식인원은 매일 300명으로 정한다.

라. 식사는 1인 1식 소맥분(건편)300그램으로 한다.

마. 부식비는 1인 1식 3원으로 한다

바. 매식자로부터 징수하는 가격은 1기당 8원으로 한다.

사. 식사에 필요한 주부식 및 기타 운영비는 시가 부담으로 한다.

3. 식대 징수방법

가. 식당운영에서 징수한 대금은 당일 17시까지 별지 서식의 답부서에 귀하여 시금고에 불입한다. 특별히 사유가 있을 시는 일 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공휴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운영비 경비

가. 주식용 양곡(소맥분)은 시에서 일괄구입 배정하고 부식비 및 기타 운영비는 구청장에게 영달 경리케한다.

나. 식당운영 및 식대 징수를 위하여 식당 책임직원을 징유직원으로 지정하여 단임케한다.

다. 식당 담당 직원은 식당 운영사항을 주청장에게 일보 또는 보고  
하고, 규정장은 10일간식의 손보로 운영사항을 시청에게 보고한다.

5. 종사원(고용원) 사용

가. 식당(상수동, 신당동), 마포 식당은 종사원 각 5명중 조리사 각 1  
명 취사부 각 4명으로 하되 남자 각 2명 여자 각 3명으로 한다.

나. 신북, 시대문(북아현동, 홍은동) 식당은 종사원 각 3명중 조리사 1명  
취사부 각 2명으로 하되 남자 각 1명 여자 각 2명으로 한다.

다. 기타 식당은 조리사 각 1명 취사부 각 3명으로 하되 남자 2명 여자 2  
명으로 한다.

이  
요강은 1966. 5. 1부터 시행한다.